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구급지도관’이 ‘구급전문교육사’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칙의 용어를 개정하고, 구급대원들의 연간 교육훈련 의무이수 40시간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사기진작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규정"을 "이 규정"으로, "(이하 "법"이라 한다)·같"을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구급차 등'이란"을 "'구급차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19 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20조 제1항"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답승하여"를 "탑승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을 "「119항공대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9조"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9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일상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4조"를 "일상 구급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로 한다.

제11조 중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로 한다.

제13조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8조의2"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의2"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5조의 2 제1항"을 "제25조의2제1항"으로, "구급지도관"을 "구급 전문교육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26조 제2항"을 "규칙 제26조제2항"으로,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5조1항, 규칙 제26조3항"을 "법 제25조제1항, 규칙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관계규정"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한다.

제21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4호 및 같은 호 구급전문교육사의 역할 중 "구급지도관"을 각각 "구급전문교육사"로 한다.

별표 3 제7호 중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로 하고, 같은 호 구급 관련 변경사항의 비교란 중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로 한다.

별표 4의 연번 12의 교육과정란 중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8의 교육과정란 중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로

하며, 같은 표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소방청, 소방본부 등 구급의학 발전, 응급처치 매뉴얼 등 제,개정 등 T/F 활동 등 학술활동 시	1시간	1	
20	응급구조학, 간호학, 보건학 등 응급의학 관련 대학, 대학원 과정 등 수강 시	1학기	40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u>이규정</u> 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정의) ----- ----- --. --- <u>이 규정</u> ----- ----- ----- <u>(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u> ----- ----- ----- -----.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1. -----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
2. “구급차 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2. “구급차등”이란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응급환자 상담요원”이란 119 <u>상황실</u>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구급대원을 말한다.	4. ----- 119 <u>종합상황실</u> ----- ----- ----- -----.
5. “소방교육훈련기관”이란	5. -----

「소방공무원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를 말한다. 제3조(구급 교육훈련 대상) ①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위 이하의 계급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차등에 <u>답승하여</u>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 및 응급환자 상담요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중 특별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일상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항공대 구급대원에 대한 일상구급교육훈련은 <u>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u>에 따른다. 제6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u>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u>」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교육훈련 대상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 -----. 제3조(구급 교육훈련 대상) ① -- ----- ----- ----- ----- <u>답승하여</u> ----- ----- -----. ② ----- ----- ----- ----- ----- ----- ----- ----- ----- ----- ----- -----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조(교육훈련비의 지급) ----- ----- ----- ----- ----- 「<u>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u>」 제9조----- -----
---	--

교육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
른 일상교육훈련을 「소방공무
원 교육훈련 규정」 제24조의 직장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구
급대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에
는 119구급대장, 구급지도관 또
는 5년 이상을 구급대원으로 근
무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
사를 교육담당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직
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
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 구
급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운영
하기 위하여 구급지도관 또는
소방위 계급 이상의 소방공무원
을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으
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하
게 할 수 있다.

-----.

제10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① -----
-- 일상 구급교육훈련을 「소
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
-----.

② -----

----- 구급전문교육사 -----

-----.

제11조(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

----- 구급전문교육사 -----

-----.

제13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성과
 측정)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 구급
 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소방
 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8조
 의2에 따른 직장훈련에 대한 평
 가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의 종
 류별 내용은 별표2와 같다. 다
 만,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은 해
 당 교육을 수탁 받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교
 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제15조(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
 ① (생 략)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4조제1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
 호의 교육을 교육훈련기관의 연
 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 과정별 계획에 의
 하여 실시한다.

③ 삭 제

④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른」(이하 “법”이라 한다) 제25
 조의 2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구

제13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성과
 측정) -----
 ----- 「소방
 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
 의2-----
 -----.

제14조(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2-----.

 -----.

제15조(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4호까지-----

 -----.

④ -----
 ----- 제25
 조의2제1항-----

급지도의사 또는 구급지도관을
특별 구급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또는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시간 인정) ①
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실시
하는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시간의 인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며, 소방관서의 장은 교육
훈련 현황을 별지 서식에 개인
별로 기록 관리한다. 다만, 구급
업무 수행기간이 90일 이하인
사람은 이 규정이 정하는 교육
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보
며, 91일~180일 까지는 20시간,
181일~270일 까지는 30시간, 2
71일 이상인 경우는 40시간을
차등 적용한다.

②·③ (생략)

④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실
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의 참
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
시간으로 인정한다.

제19조(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
련) ① 법 제25조1항, 규칙 제26

구급전문교육사

제16조(교육훈련 시간 인정) ①

규칙 제26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9조(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
련) ① 법 제25조제1항, 규칙

조3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
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양
성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④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
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3와
같다. 다만,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준용) 구급교육훈련에 관
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
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
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관계규
정을 준용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
령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제26조제3항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20조(준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1조(재검토기한)

2023년 1월 1일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